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 운영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을 년차별로 차등화 함(안 제3조)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3
 -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
-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함(안 제4조)
-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 경상북도 재정과-5911(2006.3.29)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미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미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구미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신청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 고
소 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 ※ 1.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기준 적용조항을 기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신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예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미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체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미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 111조 제5항에 규정된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 징수액의 100 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 월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 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 (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 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현행	개정안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전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구미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대장비치) ①포상금 지급신청 부서의 장(읍·면·동장 포함)은 치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 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 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 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분기별 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0조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 고 법 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94·12·31]

1. 고지유예 :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 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 [신설 84·12·31, 94·12·31]

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1.12.31, 2005.1.5] [전문개정 1974.12.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81.12.31, 2000.12.2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시·도세(시·군·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체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시·도(시·군·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

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사업소 및 본부(이하"국"이라 한다) 별로 ○○시·도(시·군·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심의를 당해 ○○시·군·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단서의 경우 시도만 적용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구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 단서의 경우 시도만 적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